

인화세: 관련 일련의 정책 실행, 신정책 7월 1일부터 시행

2022. 07

Issue 17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법>¹(이하 "인화세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전의 인화세 잠정조례와 비교해 볼 때, 인화세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세무제도 프레임은 유지하면서 세율 세목을 간소화하고 인화세 관련 우대 혜택, 징수관리 등 방면의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인화세법의 인화세 잠정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뉴스플래시 2021 issue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화세법 실행과 관련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6월말 다음과 같은 공고들을 발표했습니다. <인화세 관련 몇가지 사항 정책 집행 방법에 관한 공고>²(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2]22호, 이하 "22호 공고"), <인화세법 실행 후 혜택 정책 연계 문제에 관한 공고>³(재정부, 세무총국공고[2022]23호, 이하 "23호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법' 실행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⁴(국가세무총국공고[2022]14호, 이하 "14호 공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거래와 계약은 다양하고 많아서, 계약 유형 분류 및 인화세 컴플라이언스 관리는 항상 큰 난제입니다. 상기 문서들은 인화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별 처리를 세분화하고, 징수관리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과거 집행상의 논란의 여지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 PwC는 상기 공고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인화세법 실행 후 경내/외 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상황별 인화세 처리 방법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해외에서 작성한 계약의 처리

기존 인화세 잠정조례는 중국 경내에서 조례 중 열거된 증빙을 작성, 수령한 단위 및 개인은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었습니다. 기존 인화세 잠정조례 시행세칙은 이에 더해 중국 경내, 해외 작성을 막론하고 중국 경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조례에 열거된 증빙은 모두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외에서 작성된 계약의 경우, 어떤 케이스가 "중국 경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 중국에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해외에서 작성한 계약에 대해, 인화세법은 인화세 납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인화세법에 따르면, 경내에서 사용하는 과세증빙을 해외에서 작성한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2 호 공고는 "경내에서 사용하는 과세증빙을 해외에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경내에서 사용하는 과세증빙을 해외에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케이스	
과세증빙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내에 위치
과세증빙의 대상이 지분인 경우	해당 지분이 중국 거주자기업의 지분
과세증빙의 대상이 동산 혹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기술사용권인 경우	그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경내에 위치, 단 해외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 단위 혹은 개인에게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는 동산 혹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기술사용권을 판매한 경우는 제외
과세증빙의 대상이 서비스인 경우	제공자 혹은 수취자가 경내에 위치, 단 해외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 단위 혹은 개인에게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

- 부동산 리스 또는 매각:** 22 호 공고에 따르면, 대상이 부동산인 과세계약은 해당 부동산이 경내에 위치할 경우 해당 계약은 "경내에서 사용된다"고 간주하고 계약 양당사자가 경내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기업의 지분 양도:** 22 호 공고에 따르면, 비거주자기업이 해외에서 작성한 지분양도계약이더라도 해당 지분이 중국 거주자기업의 지분인 경우, 과세증빙을 작성한 계약 양당사자(즉, 비거주자기업인 양도자 및 양수자)는 모두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기업이 경내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경내 대리인이 징수 및 납부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양도계약의 양수자가 경내 특관자기업인 경우, 편의성을 고려하여 해당 경내기업을 대리인으로 하여 비거주자기업을 위해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화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사항으로는 14 호 공고에 따르면, 비거주자기업은 자산 인도지 혹은 계약의 경내 작성자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기업이 해외에서 해외기업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경내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케이스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관점에서는 중국기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더라도, 계약 대상이 중국 거주자기업의 지분이 아니므로, 계약 양당사자는 인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경간 서비스 제공 혹은 동산/무형자산 판매:** 22 호 공고는 증치세 법규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경간 서비스 제공 혹은 동산이나 인화세법에 명시된 일부 무형자산 판매 계약에 대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경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경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해외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 단위 혹은 개인에게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는 동산/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와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22 호 공고는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 사용되는 케이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각각의 케이스별로 주관 세무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기존 인화세 잠정조례에서는 해외에서 작성한 재화 수입/수출 계약이 인화세 과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하지 않았으나, 22 호 공고는 해외에서 작성한 재화 수입/수출 계약에 대해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경내 단위인 경우 경내에서 사용되는 과세증빙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양당사자(계약의 경내거래당사자 및 해외거래당사자 포함)는 모두 계약 금액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당사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출 계약의 처리

위탁대출이란 위탁자가 합법적인 출처로 자금을 제공하고, 은행에 위탁자가 결정한 대출대상, 용도, 금액, 기한, 이율 등에 따라 대신 지급, 사용 상황 관리감독, 대출금 회수 등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대출계약에서 은행은 수탁자로서, 위탁자와는 대리자 관계이며, 대리위탁계약은 인화세법에 열거된 과세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은 형식적인 자금대출자로 차입자와는 대출관계가 성립되며, 양사가 작성한 계약은 과세증빙 중 차입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22 호 공고는 위탁대출방식으로 작성된 대출계약의 납세자는 수탁자와 차입자이며 위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미 폐지된 <상해시세무국의 본 시 금융시스템 상 위탁대출계약에 대한 인화세 징수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호세지[1991]121 호)와 같은 일부 지방세무국의 기존 지침과도 일치합니다.

그룹 캐쉬풀 운영에 대해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나 과세근거를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캐쉬풀의 다양한 형태와 계약 체결 방식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특정 문서가 없는 경우의 인화세 납부

22 호 공고는 “기업간 작성한 매매관계 성립, 매매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주문서, 요청서 등 문서는 있으나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화세의 과세증빙은 “계약서”라고 불리는 서면 문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래에 따라 작성된 서면 증빙들도 포함합니다. 유의할 점은, 공고에서 언급한 주문서, 요청서 등 문서는 반드시 “매매관계 성립, 매매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명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과세증빙의 범위를 매매거래에 대해 발생한 모든 증빙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며, 납세자는 관련 증빙이 상기 특징에 부합하여 과세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빙이 전자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개인이 전자상거래 운영자와 체결한 전자 주문서 제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인화세 관련 몇가지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6]162 호)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관리 방법

-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인화세 과세기반 산정:** 경제 활동에서 납세자가 계약서, 재산권이전문서 작성 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실제 정산 시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예: 기본 사항만 계약하고 추후 정산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계약, 재산권이전문서 체결 후 첫번째 납세신고기간에 과세계약, 재산권이전문서 작성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 정산 후 다음번 납세신고기간에 실제 정산 금액에 따라 인화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증빙 금액 변경 처리:** 인화세 과세기반은 과세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실제 정산 금액이 증빙에 명시된 금액과 상이하나 과세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과세기반으로 합니다. 과세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과세기반으로 하고, 조정된 과세기반에 따라 세금을 추납하거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과세증빙에 명시된 금액 수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지칭하는지 (보충계약 체결, Email 을 통한 확인, 후속 주문서/요청서에 따른 결산 포함 여부)는 세무기관과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치세액 관련 문제:** 인화세법은 과세계약의 과세기반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명시된 증치세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증빙에 증치세액을 잘못 표기하여 과세증빙 과세기반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증치세액을 조정하고, 과세증빙 과세기반을 재확인하여, 조정된 과세기반에 따라 상응하는 세금을 추납 또는 환급(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 **미이행 계약에 대해 이미 납부한 인화세를 환급하지 않음:** 인화세는 재산행위세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어떤 특정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인화세는 환급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인화세 신고:** 인화세법 시행 후, 인화세는 여전히 재산행위세 종합신고 방식을 채택하여, “자체 판단,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관” 처리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또한 일부 성/시(예: 북경, 천진, 하문, 해남성)가 최근 연이어 관련 경내/외 단위 및 개인 인화세 납세 신고 기한에 관한 지방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있으니 해당 납세자들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인화세는 조세 입법 계획 중 13 번째로 발효된 조세법률입니다. 인화세법의 발표와 실행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현재 조세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보다 유리한 투자, 거래 조건을 조성하며,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경내 사용”케이스에 대해, 22 호 공고는 대상, 계약 양당사자 소재지 및 대상 사용 범위를 판단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관련되는 해외 거래당사자 및 해외에서 작성된 계약에 대해 거래 양당사자는 해당 계약이 “경내에서 사용”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고, “경내에서 사용”되는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을 통해 징수 납부하거나 자체적으로 인화세를 신고 납부하여, 세무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22 호 공고는 몇가지 인화세 과다납부/과소납부 케이스도 명시했으므로, 납세자들께서는 계약 집행 과정에서 관련 세금 추징 리스크와 환급/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 가능성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일련의 규정들도 여전히 일부 실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화폐성 자산 출자, 지분 또는 자산 양도에 대해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 사용”, 캐쉬풀 관련 사항, “과세증빙 명시 금액 변경” 판단 방법 등. 이에 대해 향후 세무기관이 명확히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wC Team 또한 후속 정책 출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1. 인화세법: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7/c5165283/content.html>
2. 22 호 공고: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7/c5176914/content.html>
3. 23 호 공고: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7/c5176915/content.html>
4. 14 호 공고: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7/c5176919/content.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TP) 최지혁 (86) (10) 6533-3676 john.j.choi@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이석원 (86) (21) 2323-8500 seok.won.yi@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2323-8888 suyon.s.kim@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 2022 年 7 月 8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